

2016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Q&A

I. 지원조건 및 트랙구성 관련

(1) '과제 지정공모'의 경우 과제 정의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및 연구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지?

- 과제정의서에 제시된 내용은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력이 양성되도록 필요한 교육 및 연구 내용을 예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제시된 교육 및 연구내용을 모두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제 인력양성 필요성, 인재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 및 연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할 경우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에 포함되는지?

- 아닙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과제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2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참여율 제한 조건에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에서도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최소 1인 이상의 참여연구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동일 대학에서 2개 이상의 과제에 지원이 가능한가?

- 과제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인력양성 기반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특정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할 예정입니다.

(4) 다수대학이 1개 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참여 학생이 2개 이상 참여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는지 교육 환경·효과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평가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대부분 단일대학에서 진행 중입니다.

(5) 참여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며, 대학과 협의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트랙에 반영시키고 인턴십, 현장견학, 공동강의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된 인원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MOU체결,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 및 우수인력 유치에 긴밀하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 수요기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으나, MOU 체결을 통하여 인력채용 등 성과활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 합니다.
* 기업은 참여기업 또는 수요기업을 선택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중복기재 불가
* 붙임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컨소시엄 기업 구분」 참조

(7) 1개 기업이 여러 개의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가?

- 동일 기업이 여러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기업 참여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는가?

- 가점기준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는 기업 참여 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 및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단,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참여기업에서 인턴십 지원, 민간부담금 분담, 교과운영 참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므로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우수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9) 재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

- 재직자를 지원하는 것은 고급트랙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현재 인력양성사업을 수행중인데 신규지원이 가능한가?

- 신청하시는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 기준 참여율이 100%를 넘거나 3책5공을 초과하신다면 사전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디다만, 비슷한 수행내용으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경우 과제에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단,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연구기간이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총 과제 수행 참여율 및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11) 수혜인원과 인증인원의 차이는?

- 수혜인원은 인건비를 1회 이상 수령한 인원입니다.
- 인증인원은 트랙이수기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인원입니다.

(12) 과제의 정량성과 목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하는지?

- 아래 목표기준은 과거 에너지인력양성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들의 연간 성과 목표치의 평균입니다. 참고하여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성과지표	가중치(%)	연간 성과 목표기준
연구역량 강화	SCI(E) 게재 건수	15	11개
인력양성 확대	석박사배출/졸업인원	5	14명
	수혜인원	5	31명
	인증인원	10	15명
	인증인원취업률	5	86.9%
	에너지분야취업률	10	74.9%
기업연계 강화	참여기업수(연차별)	5	11개
	기업연계도(점)*	10	-
	참여기업취업인원	10	6명
	기업애로기술 해소 및 특허 건수	10	7개
트랙운영 내실화	교재개발건수	5	2개
	지식나눔추진(점)	5	5점

- 특히, 학부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학부인력에 대한 수혜인원, 졸업인원, 취업인원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구 분	성과지표	목표치	
학부 R&D인력 양성	수혜인원(명)	* 각 성과지표별 연차별 목표치 제시	
	졸업인원(명)		구직자
			진학자
	취업인원(명)		
에너지분야 취업인원(명)			

* 수혜인원은 '10명±2명/학기' 범위에서 설정하고, 구직자 수는 반드시 졸업인원의 50% 이상으로 설정 필요

(13) 대학원 학생 중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가?

- 과제에서 참여 역할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인 참여도에 근거하여 참여율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학생 참여율의 50%이하 권장)

(14) 가점기준에 명기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의 범위는?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말하므로, 지방소재는 그 외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II. 사업비 관련

(1)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지 참여기업이 내야 하는지?

- 민간부담금 총액(즉, 현물+현금)은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구분 없이 사업비 총액의 25%이상을 부담하면 됩니다.(즉, 참여기업 뿐 아니라 대학, 비영리기관에서 부담하는 현물 부담액도 인정되어 산정됩니다.)
- 그러나, 민간현금 부담액은 반드시 참여기업에서 기준비율*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 비율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2/3이상일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민간부담금 예시

[사업비 총액 1억원(정부지원금 75백만원 + 민간부담 25백만원)인 경우]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 총족 여부		
	기준 충족	기준 이상 충족(+a)	기준 미달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3이상일 경우	참여기업 민간현금 2.5백만원 (10%)	참여기업 민간현금 2.5백만원 + 대학 민간현금 1백만원 (10%+a)	$\frac{\text{참여기업 민간현금}}{2\text{백만원}(10\%\text{미만})} + \text{대학 민간현금 } 1\text{백만원}$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 민간현금 5백만원 (20%)	참여기업 민간현금 5백만원 + 대학 민간현금 1백만원 (10%+a)	$\frac{\text{참여기업 민간현금}}{4\text{백만원}(20\%\text{미만})} + \text{대학 민간현금 } 1\text{천만원}$

* 기준이상 충족(+a) 금액은 기업 또는 대학 등 비영리 기관에서 부담 가능

(2) 사업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 고급트랙의 경우,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연구원으로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3) 학부 학생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

- 학부인력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10명 ± 2명/학기” 수준의 학부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년 4백만원 수준(월 40만원 내외 수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학부인력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정부지원금을 연 4.2억 원 내외로 신청가능하며, 아닌 경우는 3.8억원 수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학생에게 인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 통상적으로 인턴학생에게 인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이므로, 이는 해당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단, 중소기업 등 인건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실비지원의 차원에서 기업현장실습 지원비의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참여연구원에게 원고료, 강의료의 지급이 가능한가?

- 불가합니다. 다만, 주관 및 참여기관의 비참여 인력에게는 원고료, 강의료의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문료 등 인력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연구활동비는 지급 불가)
- 이 경우, 최초 사업계획에 반영한 금액 이상으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 매년 연차종료 후 회계법인에 위탁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정산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정산수수료 항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수수료의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산수수료 표준액>

사업비규모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정산수수료(천원)	987	1,185	1,515	1,647	1,845	2,043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인력양성사업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는 참여기관은 가산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7) 민간부담금을 민간협회 또는 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에 따르면 '사업특성에 따라' 민간협회나 단체가 부담할 수 있으나 인력양성사업의 사업특성 상 기업(참여기업)의 참여의지가 중요하므로 공고상의 기업 민간현금 부담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III.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관련

(1) 관련규정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 관련규정은 우리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 규정, 지침 등”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보고서 등 일부 서식양식은 인력양성사업 형식에 맞게 수정한 뒤 배포할 예정

(2) 과제명 작성요령이 있는가?

프로그램명	과제명 형식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자유공모)	○○○○○ 고급트랙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지정공모)	과제정의서의 과제명 사용

- 자유공모 과제의 과제명 작성 시 너무 포괄적인 제목(ex.신재생에너지 고급트랙)은 지양하고 과제의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과제명으로 작성
ex) 풍력 발전단지 O&M 기술 고급트랙, MCFC 적용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고급트랙 등

(3) 가점 적용기준은?

- 각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과 가점을 인정받기 위한 우대사항확인서 및 MOU 양식은 홈페이지 별첨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점항목인 '기업MOU'는 사업계획서 제출시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별첨으로 안내된 MOU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사업 계획서 제출시점까지 완료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가점 적용기준은 홈페이지 별첨 안내 사항 확인바랍니다.

(5) MOU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는가?

- MOU 내용에 정규직 채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고상에서 제시한 양식(에너지인력양성사업 교류 MOU)을 반드시 준수하여 합니다.

(6) 본 트랙의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대학 교수 또는 외부기관 소속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인건비 중복지급은 불가하며, 원소속 기관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학생의 경우에는 참여기관(대학)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16년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시 적용)

(7) 대학-기업간 MOU의 주체는 누구인가?

- 대학총장, 산학협력단장 및 동급이상 직위자와 기업대표(사장, 대표이사 등)와 체결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실무 부서간 체결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MOU 건수가 많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는가?

- 가점은 항목당 해당 점수입니다. 즉, 정규직원 채용 MOU가 10건이라고 해도 2점만 부여됩니다. 단, 채용 MOU가 구체적이고 건수가 많다면 평가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9) 사업계획서 작성에 분량 제한이 있는가? [공통]

- 사업내용(처음부터 사업비 총괄표까지)은 50page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기술지정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 연계 R&D계획’ 작성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분량(50page) 초과는 허용됩니다.
- 사업내용은 2단계까지 포함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모두 작성
- 사업비 작성시 총괄 사업비는 2단계까지 작성하시고, 세부 사업비 집행내역은 1단계까지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사업기간에서 날짜 작성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 총 수행기간은 2016.07.01 ~ 2021.06.30.(60개월)이며 1차단계 협약기간은 2016.07.01 ~ 2018.06.30.(24개월)입니다.

(11) 기술지정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2-2-1 참여기업 연계 R&D 계획”
작성이 필수인지?

- 그렇습니다. 기술지정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계획서 “2-2-1. 참여기업 연계 R&D 계획”을 앞 페이지의 ‘참여기업 연계 R&D 내용 및 성과물’에 제시된 기업 애로기술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기술지정 자유공모 과제의 선정 평가표가 반영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가표는 별첨의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을 확인바랍니다.)

[붙임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컨소시엄 기업 구분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을 「참여기업」 과 「수요기업」 으로 구분

구분	참여기업	수요기업(MOU기관)
정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납부하며 참여하는 기업	-MOU를 체결하고 성과활용을 위해 참여하는 기업
역할	-민간부담금을 납부 -사업운영 전반에 적극 참여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 없음 -인력채용, MOU이행 등 성과활용 역할을 함
협약여부	-협약서(전담-주관-참여) 및 사업계획서에 기관명이 기재됨	-협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사업계획서에는 존재
GENIE 입력여부	-입력	-입력하지 않음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참여연구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MOU 사본	-MOU 사본
변경사항 반영절차	-GENIE(http://genie.ketep.re.kr)에서 협약변경 신청 후 승인 필요 [제출 서류] · 주관기관요청 공문 · 협약변경승인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MOU 사본	-HRD(http://hrd.ketep.re.kr)시스템에 신청 후 승인 시 효력발생 [제출 서류] · MOU 사본 제출

- * 성과지표상의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취업률’ 등의 성과정량치는 “참여기관+수요기관”를 기준으로 함
- * MOU 주체: 대학총장, 산학협력단장 및 동급이상 직위자와 기업대표(사장, 대표이사 등)가 체결하는 것만 인정하며 실무부서간 체결은 불인정

- * MOU 내용: 트랙 참여 학생에 대한 연간 정규직 채용인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신규평가지 가점으로 반영되며, 인력채용, 강의참여 등 동 과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명시할 경우 평가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민간부담금은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부담하되, 현금분은 기업부담 원칙
 - ‘기업 맞춤형 사업’ 취지에 맞도록 현금은 기업이 우선부담 원칙
 -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이 기준 현금을 충족시 비영리기관(지자체, 교비 등)의 추가부담은 인정
- * MOU에는 인력채용, 강의참여 등 동 과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명시할 것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이행 여부 해당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참여기업’으로서 과제참여 불가